

언론법제연구의 성격과 방법

류 일 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언론법제연구의 일반적 의미

1. 언론법제론 개관

언론법제론은 언론·출판활동과 관련된 규범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특히 성문화된 법률제도를 위주로 하지만 관습으로 존재하는 언론윤리를 포섭하는 광범위한 논의영역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은 말과 글 등을 통해 내면적인 양심 및 사상을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이다. 정태적인 면을 보면 언론은 행위의 주체가 말과 글 등의 매체를 통해 의견이나 사상은 물론 정보나 지식 또는 오락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는 평등한 입장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열려져 있고 언제라도 교대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론매체에는 구두를 통한 언론 전달수단 및 문자와 그림에 의한 언론 전달수단이 망라된다. 구두를 통한 매체로는 담화·토론

연설·연극·방송·음악·영화 등이 열거될 수 있고 문자와 그림에 의한 매체는 문서·도서·사진·조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구두를 통한 의사 표현 및 교류를 언론이라고 한다면 문자나 상형을 이용하고 복제에 의존하는 의사교류 및 표현을 출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언론과 출판은 모두 인간의 언어사용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언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사회적 산물로서 세계와 사회를 향해 사회적 깊이와 역사적 축적을 전수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고 언론은 이 언어의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정체)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탯줄 같은 것이다. 언어를 매개로 한 언론·출판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실현된다. 신문과 방송은 모두 인간의 입과 귀를 연장하여 더 큰 언어의 힘을 작용시키는 확성기와 보청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²⁾

그런데 오늘날의 언론·출판매체들은 권력과 자본 및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만 소유되고 통제되며, 이미 정해진 언론의 방침을 기술적 합리성에 따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의 활발한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의사교류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가능성이 필연적이 될 때 언론의 자유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언론의 평등은 현실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현대의 언론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다수 국민이 향유할 수 있게 하고, 현대인의 다양한 사회성을 보장해줄 언론규범에 대한 당위적인 요청이 있게 된다.

법은 현실적·구체적인 규범으로서 국가의 강제력이라는 배후세력을 동반하여 개인과 사회에 작용한다. 법은 어떤 행위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제력으로

작용하는 사실적 권력을 합리적으로 정당화시켜줄 논리적 규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과 각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시켜줄 역사적 규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 이 사회 체제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은 바로 이 논리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의 이해를 둘러싼 정당성 평가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법제는 법의 규제적 측면을 부각시킨 일본어인데 「신문법제」 「출판법제」 등의 용어로 언론현상에 적용되었으므로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법(law)과 법제 또는 법규(legal regulation)나 법체계(legal system)를 확연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의 한 형식에 불과한 법제, 법규, 법체계가 그 내용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언론법제연구가 1960 년대에 이르도록 언론의 역사나 구조와 기능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그것들을 무시한 채,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내지 「경제적 강제로부터의 자유」 등 정태적 연구수준에 머물면서 언론과 법의 다양하고 광범한 접촉을 간과한 것³⁾은 법제라는 용어 자체가 발산하는 법적 정서의 통제 지향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언론법 연구가 언론법제 수준을 맴돌며 법적 통제의 정당성을 검증하거나 언론규제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논리를 제공하는데 빠져 있었던 것도 이웃나라 일본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습속과 민족의 화신에 의하여 성립·발전하다가 일정 정도 문화가 발달하면 법률가에 의해 발전이 주도되는 바, 법은 민족공동체 속에서 자라나 그 문화의 전개와 생명을 같이 하는 만큼, 민족이 독자성을 잃으면 법도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의 사회적 토대 (social basis of law)는 민족공동체의 정신적 요소들이고, 법의 소재(the material of law)는 민족의 전통 속에서 나오며 과거와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법의 유효성은 그 나라 사람들의 관습이나 윤리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지 실정 그 자체만으로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⁴⁾ 이 논리는 언론법에도 준용될 수 있다.

2. 한국의 언론법과 그 연구 상황

언론법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반영하고 우리 민족의 확신에 의하여 성립·발전하여야 했으나 서세동점의 역사적 물결에 휩쓸려 수입·전파된 다른 많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사회적 현실만을 반영하고, 거꾸로 사회현실을 규제·지도하는 법으로 존속해 왔기 때문에 언론법의 고유한 본질에 대한 탐구보다는 언론법과 접촉되는 부분적 현상의 분석에 급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 법학 교수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교수는 지식의 오퍼상이었다. 서양지식의 어느 썩은 구석을 평생 물고 늘어진 교수가 위대한 교수였다. 칸트고 괴테고 사르트르고 욱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주 모시듯 부여잡다가 죽는 것이 우리들 교수들의 슬픈 식민지적 삶이다.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서양의 근대법은… 그 시대의 특수한 소산이고 동시대의 조선에서는 누구도 몰랐던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었는데 우리들이 절대적인 진리로 섬겨야 하는 것인 양 믿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이 나라 법학자의 대부분」⁵⁾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이 특정한 한 사회에서 규범적 기능을 더 잘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 사회의 현실적 제조건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고 그 사회의 현실적 제관계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에 대한 비교는 법과 사회의 조화에 대한 참된 인식의 기초가 된다. 참된 인식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비판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비판의 출발점이 곧 정당한 비교인 것이다. 정당한 비교는 자신에 대한 허황한 교만을 털어내고 편견의 축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국수주의나 지역주의 대신 국제화와 개방화를 위한 올바른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다.

언론법 연구의 정당성과 실효성 역시 올바른 비교를 통해 확보되는 것인 만큼 외국법과의 비교, 다른 법과의 비교 및 각 사회의 특수성과 각 법의 특수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언론법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언론과 법의 관계가 현란한 모습까지 띠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한국 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전개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언론법의 연구범위

언론을 둘러싼 사회일반은 미국의 님은 꼴인데 비해 법은 일본을 경유해서 수입된 독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독일 근대법 이론에다 한국 언론 현상을 꿰맞추고 그 법 이론이 근대 독일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사회언론이 부딪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오신하는 경향이 법제연구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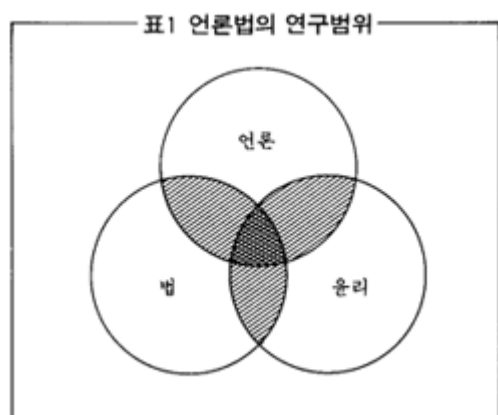
한국언론법연구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동시에 법질서의 구조적 연관성과 규정적 요소의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체계 내에서 실정법으로 정해진 것과 한국사회에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범의 현실적 작용성도 고찰할 수 있다면 언론법 연구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더 적합하고 더 나은 언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언론법 연구에 국가가 제정하거나 사회가 인정하는 규범의 상호관련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는 안목이 요구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자면 우선 「언론법과 언론윤리의 공통성과 차별」⁶⁾을 평면적으로 분석비판하고 그것을 사회경제적 제요인과 결합시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비교능력도 필요할 것이다.

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절차는 대체로 비교대상이 되는 외국의 법 제도에 대한 인식, 비교대조에 의해 확인된 유사성과 상이성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⁷⁾

비교대상이 되는 외국법제로 우리는 흔히 독일법과 미국법을 꼽는다. 두 나라 법은 그 근원이 다소 다르고 법문에 사용하는 용어개념이 다르다. 말하자면 법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 개념간의 소통이 어렵고, 법의 상하위 단계도 두 나라 법이 크게 다르다는 뜻이다. 거기다가 사회주의 법은 자본주의 법인 독일과 프랑스법 등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법을 경제문제와 연관된 중층적 구조를 가지는 이데올로기로 보는 데다, 법의 발생이 역사적 유물론의 합법칙적 상부구조 생성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조문만의 평면적 비교는 단순한 법조문 나열로 치부하는 경향이다.⁸⁾

윤리는 더욱 비교하기가 어렵다.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정치적 함의가 풍부한 사회의식이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에게 지향목표를 설정해 주는 일을 한다. 언론윤리 역시 언론에 관한 법적 체계를 뛰어넘어 언론행위를 규율 하거나 촉진하는 일을 한다.⁹⁾

표 1 은 언론법연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언론·법·윤리의 3 원적 관계를 도해해 본 것이다 이 표에서 언론법은 빗금친 부분 모두를 연구영역으로 취하나, 그 중 가장 심층적인 분석과 통찰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쌍빗금의 부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언론법의 연구에 사회적 문맥에서의 언론학적 지혜와 법률지식 및 윤리학의 방법론이 도입되어야 함은 바로 이 연구대상 자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 대상은 일반성과 특수성의 통일인 만큼 언론법연구에서도 그 특수성은 법규범 전체의 수많은 규정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언론법연구의 일반적 함의를 분명하게 인식하자면 언론과 법, 언론과 윤리, 법과 윤리의 다양한 접촉을 꿰 뚫을 수 있는 통찰력에다 법규정 하나하나의 사회적 깊이와 역사적 두께에 대한 지각 능력도 필요하다. 말하자면 언론법의 연구에서는 규범의 일반적인 성질이나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언론법의 고유한 모습도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언론학, 법학, 윤리학의 종합과학으로서 언론법연구에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의미에 더하여 언론법의 특수성에 대한 풍부한 사례연구가 요구됨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I. 언론법제연구의 특수성

1. 언론법제의 연구시각

언론법제연구의 특수성을 논할 때 용어 그 자체에 대하여 편협한 해석에 집착하다 보면 언론에 대한 규제적 보호적 기능만을 부각시킨 채, 법이 맡은 역할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관계의 안정성 유지와 조화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말하자면 언론법제연구라는 용어

때문에 법의 현실적 작용에 대한 편견을 낳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사용되는 언론법제는 언론법과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그 정확한 해석은 각각의 문맥에 맡겨 두기로 하겠다.

언론법제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거의 비슷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즉 매스미디어의 역할 증대와 그것의 집중·독점·계열화에 따른 언론자유 보장 문제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빈번화 속에서 헌법상 가치로서의 표현자유를 신장시키는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무적·정책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 부담들을 복잡한 현실사회조건 속에서 경감시켜 가기 위해서는 언론부문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합치시키는 논리적 장치를 개발하고, 구체적 현실을 근거로 하여 언론법적 이론을 구성하는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

언론법연구의 특수성은 상품성과 인격성을 동시에 가진 언론을 보호·육성하는 한편으로 특정 언론기업의 사상 주류장악을 규제하여 언론내용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규범의 정립과 실천을 관철시킨다는 데 있다.

언론관계법의 범위와 존재양식, 각 법의 존재목적과 법들 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표 2를 인식지형(cognitive map)으로 제시하겠다. 표 2에서 책임의 시각은 언론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보려는데 비해 자유의 시각은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법연구에 자유의 시각과 책임의 시각이 각각 필요함은 모든 규범의 연구가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direct), 옳은 일의 수준을 배분해 주며(distribute), 옳은 일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룩되지 않을 때 옳지 않은 바로 그 상황을 교정해주는(Correct) 데 필요한 논리와 이론을 내놓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언론법의 사회체제적 특성

언론법의 구조도 이와 같은 필요에 상응하게 ① 법에 의한 언론자유 보호, ② 언론자유 중요도에 대한 위치부여, ③ 언론자유와 상충되는 다른 법익과의 균형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이 3중 구조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져도 언론법은 그 고유한 작용력을 잃는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사회경제체제가 어떻든, 어느 나라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자유 향유주체에 대하여는 자유민주주의헌법과 사회주의헌법이 크게 다른 입장을 취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인 것으로 보아 그 향유주체가 마땅히 개인으로 해석된다. 헌법은 이 자유들 가운데 하나로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의 하나로 삼는다. 「자유주의적 가치관은 모든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상정하지만 실제로 만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만인에게 의무를 부담시킨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책임이 따로 따로 분리·독립되는 것처럼 각각 분리·독립되는 것으로 본다.»¹⁰⁾ 그러나 자유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이 자유를 누림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의 양과 개인이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고통의 증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상태에 빠지게 된다.»¹¹⁾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강제력이 항상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권력과 법의 결합이

빈번해진다.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법과 윤리의 뼈대인 공리주의는 ① 목적론에 의거한 귀결주의적 원리, ② 기본적 선에 관한 가치의 인정, ③ 방법론적 개인주의 등 세 개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법이 제정·운용되도록 안내하고 있다.¹²⁾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이 공리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염두에 두었음은 불문가지 이므로 구체적인 논증을 생략한다.

사회주의 법은 집단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교차하여 변증법적으로 조화된 합일의 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언론 자유에 대한 가장 상위의 실정적 법원인 헌법이 사회주의 각국에서도 제정되었다. 법원이란 정당하게 확립된 절차에 의해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결정 내지 규범으로서 법의 존재방식을 말하지만 사회주의 법에서는 특정한 사회의 사회 경제 질서를 낳는 특유한 방식의 정치적·경제적 관련을 가진 법적 상부구조를 뜻한다.¹³⁾ 사회주의 법에서는 개인이익의 희생 위에서 집단이익의 실현을 찾지 않으며 사회주의적인 의무와 책임이 자유와 권리를 내포하고 있거나 또는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사후처벌이나 의무부담보다 사전 교육과 계몽을 통해, 사회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개인의 행위를 통제한다.¹⁴⁾ 그러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도 사회주의 체제의 원리와 이념에 따라 국민 개개인과 인민집단에 동시에 보장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언론법의 존재형식이란 뜻에서 언론법의 법원을 보면 자유주의국가 상호간에도 상당히 다종다기 함을 알 수 있다. 영국은 불문법주의에 입각하여 언론자유는 대부분이 관습으로 전수되고 판례에 의해 확인 또는 부인되지만 최근에 이르러 실정법에 의해서도 보장되거나 규제된다. 독일에서는 오랜 지방분권통치의 영향으로 주법이나 주간협약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 또는 규제되고 있으나 연방차원의 각종 실정법도 이에 한몫 거들고 있다. 미국의 언론자유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 연방헌법은 영국의 판례법(common law)이 아니라 로마법을 전수하고 있어 연방대법원의 유연하고도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영국 판례법의 전통적인 엄격 해석원칙을 포기하였으므로 미국에서의 언론자유는 비교적 신축성 있게 보장 또는 규율 되는 셈이다.

프랑스의 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시민생활을 규율 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사회정의를 표현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원리이기도 하다. 언론자유는 헌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로서도 시민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3. 언론법연구의 주요내용

표 2에 열거된 언론법의 특수한 주요 내용들이 언론법의 구조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신문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각종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전체의 언론활동을 규율 한다. 신문관련법은 공표행위가 사전 억제되거나 검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간섭을 막아주는 금지 규범과 언론자유를 향유하는 개개 주체의 자유로운 발표를 명령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 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 관련법인 정기간행물 법은 오히려 언론자유 발현을 제도적으로 규제 하려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

방송법은 자원의 유한성과 희소자원의 배분을 위한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방송의 자본독점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 방송의 자유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려고 한다면 방송설비 이용에 있어서의 평등성을 확보해 주고 방송국 소유자에게 방송편성과 관련된 통제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법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선언하는 프로그램적 규정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며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등 복잡한 언론법제를 통해 방송사업을 여러 부문으로 분할하고 있다.

표2 언론법의 탐구시각

책임의 시각 (더 많은 규제)		자유 의 시각 (더 많은 보장)
• 명예훼손 • 저작권 • 음란물 • 신성모독 • 국가기밀 • 안보	• 반론권 • 알 권리 • 액세스권 • 정보공개	
• 언론독점금지 • 정보원(源)보호 • 프라이버시	• 방송법 • 신문법 • 출판법	

각개의 법규정은 전제(hypothesis), 처분(disposition), 제재(sanction)의 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3요소가 한 가지 법률의 동일 조항에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른 조항이나 심지어 다른 법률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전제는 법규정이 실행될 수 있거나 실행되어야만 하는 조건이고, 처분은 법규정이 명시한 실제적인 행위규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며, 제재는 법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법은 전제만 제시하는 선에서 끝나는 언론자유보장규정과 함께 언론자유규율규정에서는 전제와 처분과 제재가 확연하게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방송과 정치의 비밀거래에 대한 의혹을 사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4. 반론권과 알 권리 및 정보공개

반론권은 우리나라의 언론관계법에 정정보도 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언론중재제도에 의해 그 실효성이 확실히 담보되고 있다. 반론권은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반론대상이 된 당해 언론기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이나 자본력과 다름에서 당해 언론기관의 표현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서 그 운용의 묘가 항상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반론권은 언론자유에 대한 보충적 권리의

하나로서 현대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이룩한 성과를 취득할 수 있는 소수의 자본력만이 언론기관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개선하고 언론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반론권에 관해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합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자유언론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건전한 언론 윤리의 영역에서 옴부즈맨이라는 제 3 자의 조정¹⁵⁾에 맡겨져 있다.

알 권리는 언론자유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알 권리는 수신자인 일반대중의 자유를 시원으로 하여 언론기관이 정보의 원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언론자유가 알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다소 논란이 있겠지만¹⁶⁾ 헌법 제 21 조 제 4 항에 근거를 둔 엑세스권과 함께 언론매체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보권의 확대를 도모하는 진보적발상의 구체화이며 헌법 제 10 조의 내포로서의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알 권리가 보도기관의 내부적 자유와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충을 조정 하는 명쾌한 논리의 개발과 적용이 역시 언론법 연구의 몫으로 남아 있다. 알 권리를 구체화한 정보공개법이 외국의 언론법에는 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연방정보자유법(FOIA), 프랑스의 공문서공개법, 독일헌법에 의한 정보고지청구권과 각 주법의 규정, 스웨덴 헌법에 의한 정보수신권 등이 언론기관이나 국민 개개인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의 투명성을 입증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감시 체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의 전면공개 및 비공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제한범위의 법정이 논의되고 있고¹⁷⁾ 행정연구원¹⁸⁾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¹⁹⁾이 각각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5. 언론자유와 언론평등을 위한 언론법

표 2 의 좌측 아래쪽은 언론자유²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치 가운데 비교적 공권력의 활동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법규들이다.

우리나라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는 언론기관의 소유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나 자본주의적 투자방법은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규정상 처분능력이 확실하게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시장경제사회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있는 나라에서 언론관계법상의 공공성과 공익성 선언만으로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규제할 명분이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다.

(1) 언론기업의 독과점 규제 장치

미국의 경우에는 신문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를 다소 완화시켜주기 위한 법규로서 신문보존법(Newspaper Preservation Act)이 제정되었던바 있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신문기업이 독점을 강화해 간다는 비판에 부딪쳐 1990 년대 들어 실효성을 잃고 있다. 신문보존법은 1 개 도시에 2 개 신문이 공동운영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각각 별도의 편집국을 두어 독자적인 뉴스와 논평의 다양성을 유지해 가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마이애미, 콜럼버스, 세인트루이스 등에서는 신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San Francisco Examiner 등 6개 신문사들은 지역신문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²⁰⁾ 「신문기업의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독점 금지법을 독점적 신문기업체인에 부과하는 것은 특정한 언론사주의 자유언론을 위협하는 일이지만 신문기업의 집중이 상품보다 훨씬 더 인간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자유가 기본권의 위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문제를 놓고 언론법 분야에서 깊은 통찰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²¹⁾ 신문기업의 독과점 확대는 신문시장에의 신규진입을 막아 논평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방송매체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형태는 다르지만 집중과 독점 및 방송기업의 계열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방송의 자원인 전파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경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정보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구태여 언론법의 법원으로서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법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정황 때문인 것이다.

(2) 정보원 보호 장치

언론자유가 계속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원을 감싸면서 언론기관과 접촉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언론인이 취재의 원천을 밝히는 것은 출처가 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 중심으로 볼 때도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취재원을 밝히라는 법원명령을 거부하면서 30 일간의 교도소 생활을 선택한 미국 Saint Petersburg Times 기자의 용기는 그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주장하듯이 합헌적이고 합법 정당한 것이다. 그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언론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²²⁾ 미국의 26개 주에서는 정보원 보호법(일명 Shield 법)을 제정하여 언론의 취재원비닉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취재원비닉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로서의 중요성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언론법연구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 등의 입법취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그 합법정당성과 현실 작용성을 검증해 주어야 할 절박성이 있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표 2의 좌측하단에 표시된 프라이버시도 언론자유를 보장할 때 생기는 그림자의 영역에 위치하므로 언론자유만 강조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기하는 것은 역시 부당하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 한다.»(제 17 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도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신서개과 등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전제) 죄를 처벌하는(처분) 제재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아직 대화를 엿듣는 행위(도청)나 비밀녹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헌법상 정해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 줄 적절한 처분과 제재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란 대체로 자신의 개인적 소신과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²³⁾ 이 권리의 역사적 기원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또는 신탁법과의 관련²⁴⁾ 속에서 찾아지지만 미국에서는 20 세기 들어 민사상 불법행위(tort)와 헌법이론의 발달로 말미암아 다른 권리로부터 독립된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²⁵⁾

프라이버시권은 미국헌법에서는 수정 헌법 제 4 조에 의해 보장된 일신상의 안정, 자유와 사유재산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로부터 분화되어 저술이나 그림 등을 통해 나타난 사상, 정서 또는 감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 받지 않을 권리로 확정되었다. 이 권리를 헌법정신과 헌법구조로부터 창출하여 미 국민이 누리는 가장 기본권인 권리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데는 Douglas 판사의 개인권리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연한 논리 구성이 큰 역할을 했다.²⁶⁾ Douglas 는 프라이버시권을 개인행동의 자율성, 획일주의의 거부와 개인적 존엄의 견지에서 적극 옹호하지만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때 합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 가운데서 언론자유보다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사 사건(Time Inc. v. Hill)에서 Douglas 판사는 실제의 인질 사건을 극화시키는 과정에서 Hill 씨 가족들의 사생활이 타임지 그룹의 라이프 잡지에 노출된 것이 불법(tort)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동조 의견을 냄으로써 언론자유가 프라이버시권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해법 제정의 분위기가 성숙되면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조명이 간간히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그의 생활이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될 때까지」²⁷⁾는 개인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언론법 연구는 이 두 가지 법익의 충돌로부터 공공적 사실의 보도를 자유롭게 해줄 법이론의 구성을 사법부의 부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언론자유와 제한 법원을 규정하는 장치

표 2 의 좌측 상단면은 실정법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큰 행위 사실들로서 언론자유와 상충하는 영역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들은 대체로 범죄를 구성하거나 타인의 법익을 명백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하고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막강한 권력기관과 방대한 자본력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정당한 자유언론을 명예훼손, 저작권위반, 음란물유포, 신성모독, 국가기밀누설, 안보이해 등으로 몰아붙일 때, 자신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한 정황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은 전기의 경우에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 내지 입증할 수 있는 법 실무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형편이었음을 소송절차법상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사법적으로 자기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법연구에 형사법상의 지식과 형사판례에 대한 분석이 보태져야 하고, 처벌의 대전제인 법조문 자체가 정당한 법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적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이 지침은 각 법조문의 논리적 정당성(사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규범적 정당성」(효력주장의 정당화) 2 차까지도 확보하여 언론행위 주체가 규범논리에 의한 실천적

윤리법칙에 의거하여 해야 할 일(명령), 해서는 안 될 일(금지), 할 수 있는 일(허용), 무관한 일(방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법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5) 소결론

위의 고찰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추론해낸 언론관계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관계법도 중층적·복합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

둘째, 언론관계법의 법규정 구성요소인 전제, 처분, 제재는 동일한 법규 내에 있지 않고 상하위의 법원들에 뒤섞여 있어서 상당한 법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각 구성 요소와 그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언론법의 내용은 언론활동을 보호·육성하는 성격과 함께 다른 법익과의 충돌을 방지·조정하기 위한 규제적 지도적 성격이 교차되어있다.

넷째, 언론규범은 오랜 관습으로 형성된 불문법과 그것의 바탕을 이루는 자연법 및 국민대표성을 가진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으로 구성되어 언론법에는 프로그램적 성격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다섯째, 언론법은 규범의 고유한 목적인 정의실현과 언론행위의 당위성을 제시함으로써 언론현실을 개선하고 지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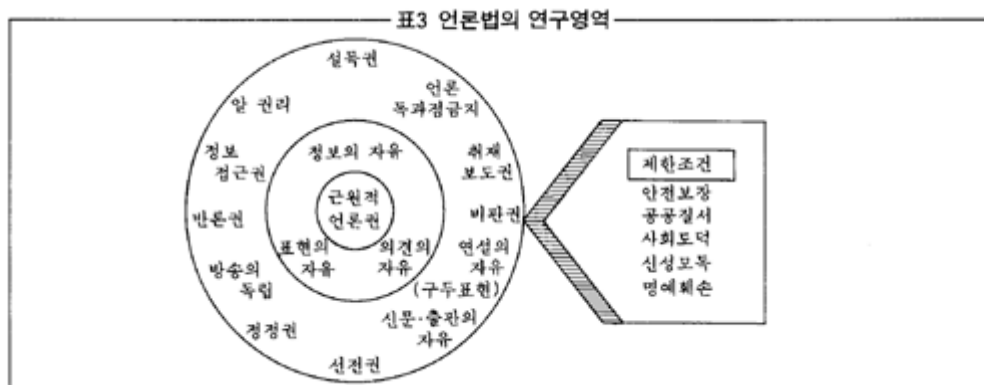
III. 언론법 연구의 방법

1. 언론법 연구영역의 중층적 구조를 보는 시각

언론법 연구는 다른 많은 연구가 그렇듯이 하나의 체계로서 사회가 기능하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적 규범을 정당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³⁰⁾ 이 논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법칙의 특수성과 법의 존재양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법과 법을 비교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 논의에는 논리성, 합리성, 실천성 등이 골고루 보장되어야만 연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법 연구에서는 3 가지 인식 활동이 위의 3 개 특성을 수용해야 한다.

언론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사접촉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³¹⁾ 헌법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인권으로서의 언론권(right to communicate)」³²⁾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할 수 있다. 언론법 연구는 언론법 영역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자유와 연구방법의 자유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 가치질서로 존재하고 있는 언론법 측면의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다. 진리탐구란 사물의 바른 이치인 진리를 찾아내려는 모든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관찰과 사색은 물론 답사, 발굴, 실험, 조사, 독서, 집필 등의 여러 가지 방법과 진지하고 계획적인 모든 활동을 망라한다.³³⁾ 먼저 언론법 연구의 영역을 표 3에 의해 3 개의 동심원으로 설명하겠다. 이 표는 D. Fisher가 언론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원도형을 필자가 언론법의 연구영역에 대한 시야를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약간 수정한 것이다.³⁴⁾ 표 3에 등장하는 언론법 개념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일 가운데 위치하는 동심원을 이루는 근원적 언론권은 원시기본권으로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킨 가장 근원적인 언론권인 바, 이 언론권의 내부는 양심과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근원적 언론권은 자아커뮤니케이션(intrapersonal communication)과 두 사람만의 대인적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에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보장되는 것으로 언론법의 개입영역이 협애하다.

둘째, 두 번째의 동심원은 근원적 언론권을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표출시키는 제 2 차적 자유로서 의견의 자유, 정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직접적 인식에 근거한 정보는 의견구성의 요소가 되나 그것을 외부로 표출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아 표현의 내용과 형식, 시간과 장소는 다소 상대성을 띠게 될 수 있다.

셋째, 세 번째의 동심원은 제 2 차적 자유를 발현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제도적 보충권(entitlements)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① 설득권은 자신이 믿는 신념,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동조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②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반론권, 방송의 독립, 정정권 등은 언론법제 연구의 특수성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③ 선전권이란 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이성애 호소함으로써 사람들의 성향을 움직이려는 시도이며, ④ 신문·출판의 자유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같다. ⑤ 연설(구두표현)의 자유는 구두에 의한 언론행위의 자유를 말하며, ⑥ 비판권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언론기관이 갖고 있는 대 국가적 비판요구권이다. 여기서 비판은 이유 있고 건전한 비판만을 뜻한다. ⑦ 취재보도권이란 언론인이 정보자료를 수집·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해야 하는 천리로서 언론기업 내부의 편집·편성권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언론독과점 금지는 언론기관의 자유롭고도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넷째는 언론자유 의 활성화에 제한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적 · 사회적 · 개인적 법의 침해의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위력은 제 3 차 동심원에 포함된 권리들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매인이 가진 근원적 이고 천부적인 언론권에까지 미치기 어렵다.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은 신성모독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언론자유를 보충하는 권리들에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며 사생활(privacy)도 언론자유 의 보충권과 충돌하여 그 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언론법은 구체적으로 표 3 의 연구영역을 망라하는 제이론과 제경험을 종합하여 언론자유를 신장하고 시민들이 가진 다양하고도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굴절 없이 표출되어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고 인간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언론법연구가 이 필요를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2. 언론법 연구의 제방법(론)

언론법에 대한 폭넓은 시야는 언론법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성을 암시해준다 최근까지의 언론법 연구가 매스미디어의 기술발전이나 사회제세력의 복잡한 관계를 충분히 살펴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법의 연구목적 을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바 사실이고 언론윤리연구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외국의 제도 · 법리 · 판례를 수입하는 데 급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론법 연구방법 역시 수입되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언론법 연구에 영향을 미친 Gillmor 의 언론법연구방법론 분류를 보면 「하나 는 전통적인 법 연구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 실증적이고 행태주의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의 적용」³⁵⁾ 이 라고 한다.

전통적인 법 연구방법은 헌법으로부터 각종 특별법규에 이르기까지 실정법의 제 규정들이 언론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법리으로써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법 해석학이 주류를 이루며 법률적 삼단논법을 살피는데 시야를 집중한다. 법률적 삼단논법이란 추상적 법조문인 대전제와 구체적 사안인 소전제로부터 결론으로서의 판결이 도출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연구자는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법리해석과 문리해석의 논리성을 검토한다. 언론법해석을 위해서는 법률에 관한 상당한 전문지식과 언론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험 실증적 언론법 연구는 법의 기능을 유기체의 생리에 비유하면서 언론과 법이 접촉하는 외양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언론법 분야에서의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 도입이 늦었으므로 미국에서도 이 방법론이 언론법 연구에 적용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판사들의 이념적 경향과 언론관계 판결에서의 의견제시 경향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거나 특정 법규의 입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문화의 수준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는 일, 그리고 각종 언론법의 국가간 비교를 위한 내용분석, 법률용어에 대한 일반의 이해도 조사 및 법조인의 사상의식이나 관점분석³⁶⁾ 등에 좀 더 과학적이고 타당도 높은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이 동원될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법률문화의 일반성과 언론법의 특수성을 판별하는 정태적인 기초 자료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나 언론 관계법상 보호받아야 할

법익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발견 등에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데이터 분석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두 개의 연구경향이 상호 분리되어 평행적인 상태로 나가기보다는 방법론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변증법적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법의 자기 완결성을 이해하여 진리에 접근하는 데는 이미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언론법제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적 안목을 갖춘 방법론이 소요되고 비교언론법을 위해서는 법의 단계구조, 용어의 개념, 판례 등 구조적 연관성에 대한 논리적 판단의 기초로서 내용분석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는 실정법 규범에 집착하여 사실관계를 오판하고 가치 판단을 경직화하여 언론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법 해석에서는 「문리 해석시에 의미 폭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규범에 귀속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의미내용을 찾아내기에」³⁷⁾ 힘써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법해석학과 좀 더 실증적인 언론법 내용연구에다 판례에 대한 논리분석이 결합된다면 언론법의 이론구성과 언론법체계의 법적 효과는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에 흠을 내는 언론 규제법의 빈번한 제정」³⁸⁾이 줄어들 것이며 언론자유를 빙자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상처 내는 일들도 심판되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평등이 통일되는 복지언론의 전개가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Gillmor 등이 지적하지 못했던 제 3, 제 4의 방법으로 Perelman의 논의 이론 및 막스주의적 법제연구방법이 있다. Perelman의 논의 이론은³⁹⁾실체법에 대한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언론법 방법론이나 독일식 법해석학 방법과는 달리 입법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정당화 방법을 논의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프랑스권의 법 철학자로서 Perelman은 이미 그리스시대에 재발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인 「Topiques」에서 다뤄진 바 있으나 현대 논리학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논의의 한 이론」을 재발견했다.⁴⁰⁾ 「논의의 한 이론」은 증명을 목적으로 한 형식논리 대신 실천적 판단을 위한 가치판단의 논리이다. 또한 이 논리는 어떤 한 행위, 품행, 행동경향, 주장, 선택, 결정 등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규범의 논리이다. 이 논리에 따른 정당화의 대상은 사람(행위자)이나 명제(규칙) 둘다 해당된다. 행위자 정당화는 행위자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행위자를 어떤 행위로부터 면책시키는 행위자 부작위의 정당화이다. 명제의 정당화는 명제에 따르거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리고 명제(규칙)를 지지 하는 진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⁴¹⁾

막스주의적 언론법 연구방법은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적 법 연구시각을 제공하면서 인간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발전법칙인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법(국가가 정한)이라는 상부구조의 연구에서도 사회의 경제적 기초인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매개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다. 언론법연구에서도 막스주의자들은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국가학과 법학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면서 법의 존재에 특히 규정적인 역할을 하는 생산관계와의 불가분한 관계를 중시하며 법률 사이버네틱스 이론처럼 자연과학과의 상호작용과 상호침투는 물론 법과 언론간의 피드백(feed back)적 관계에도 접근하려고 한다.

42) 지면의 제약으로 비교적 언론법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⁴³⁾

주

- 1) 문홍주, 주관식헌법, 해암사, 1978, p.106.
- 2) 언어의 힘과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E. Sapir,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5, 1929.와 그의 제자 B.L. Whorf,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The Technology Press, New York. 1956.이 대표적인 참고문헌 이다.
- 3) 清水英夫, 법과 매스커뮤니케이션, 사회이상사, 1976, pp.3~5.
- 4) H.J.Eikema Hommes, Major Trends In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 NMPC, 1979, pp.189~197
- 5) 박홍규, 비교법, 이론과 실천, 1993, p.21.
- 6)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아침, 1992., PP.18~24 참조
- 7) 박홍규, 앞의 책, p.46.
- 8) 藤田勇, 마르크스주의 법학입문, (이경주 옮김), 이상과 현실, 1990., pp.75~85.
- 9) 유일상, 앞의 책, PP.299~300.
- 10) 강진철, "북한법연구의 현황과 과제", 법과 사회이론연구회(편), 법과 사회, 창간호, 1989., pp.208~209.
- 11) J. Bentham,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의 요지 .
- 12) 内井揔七, 자유의 법칙, 이해의 논문, 미네루와서호, 1980., PP.164~165.
- 13) W.E.Butler, Anglo-American and Socialist Legal Systems, 박홍규(역).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 법, 일월서 각, 1980., p.24.
- 14) 강진철, 앞의 글, p.209.
- 15) 松井修視, "반론권", 석촌선치편, 「열린 매스컴이란」, 시사통신사, 동경, 1979., p.551.
- 1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88., pp.320~321.
- 17) 임재홍, "'정보주권' 확립 하는 전면공개가 바람직"저널리즘. 1993., 가을호, 한국기자협회, pp.10~21
- 18) 앞의 책 PP.29~37.
- 19) 앞의 책, PP.59~65.'
- 20) Stephen Lacy, Impact of Repealing the Newspaper Preservation Act. NRJ Winter 1990., pp.2~11.
- 21) D.C.Coulson, Commentary : A First Amendment Perspective on Antitrust Law and Newspaper Chain Ownership, Monopoly, NRJ Summer 1986., pp.3S~ 42.
- 22) 문화일보, 1993. 3. 13.자, '취재원 밝히느니 감옥 가겠다.'
- 23) 안경환,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고시계, 1986., p.77
- 24) M. Ernst & A.Schwarz, Privacy' Right to be let alone, 1962., pp.1~43. Yovatt v. Winyard 사건(1820)에서 전직수의사 보조원이 수의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처방전을 무단 이용하는 것은 신뢰관계(Trust and Confidence)를 위반한 것 이라고 판결하였다,

- j) Samuel Warren and Louis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4, 1890., pp.193 ~ 205.
- 26) 안경환, 앞의 책, pp.78~83.
- 27) D.Gillomr and J.Barren, Mass Communication Law—Cases and Comments, (3rd ed.) West Publishing Co., 1979., pp.317~323.(Douglas 판사의 의견)
- 28) 유일상, 앞의 책, PP.19~20.
- 29) Karl Larenz, (양창수 역), 정당한 법의 원리, 박영사). 1986., pp.12~ 13.
- 30) 논의의 이론에 대해서는 Ch.Perelman et L. Olbrechts-Tyteca, Traité de l'argumentation, presse Universitaire de France, Paris, 1958. 2e ed., Edition de l'Université, Bruxelles, 1970 을 참조할 것(논의는 규범의 정당화를 위한 비형식 논리로서 변증법적 논리와 대비 된다)
- 3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중), 박영사, 1992., p.374.
- 32) Desmond Fisher, "The Right to communicate : Toward a definition" UNESCO Proc., No.37,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Communication Problems, 1979.
- 33) 허영, 앞의 책, pp.251~252.
- 34) 원도형은 D. Fisher, 앞의 글과 유일상, 앞의 책 pp.175~ 178 을 참조할 것.
- 35) D.M.Gillmor and E.E.Dennis, "Legal Research In Mass Communications", In G.Stempel III et al. Research Methods in Mass Communication,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81., p.321.
- 36) R.V.Looper 는 W.J.Brennan 판사가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판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서술을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R.V. Looper, "Communication Law and Justice, Brennan's Structural-functional, J.O.1993., Spring, 언론중재 1993., 가을 호, pp.76.~82. 번역참조.
- 37) R.Zippelius, 김형배(역), 법학방법론, 삼영사,1981., pp.70.~73.
- 38)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이론, 법문사, 1980..p.38.
- 39) Ch. Perelman, Droit, Morale et Philosophie, Libraire Géné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L. G.D.J. Paris, 1976 에 논의이론의 방법론이 소개되고 있다.
- 40) Ch. Perelman et L.Olbrecht Tyteca, "Traité de l'argumentation" 영역판, The New Rhetoric : A Treatise on Argumen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9.
- 41) Ch. Perelman, Jugements do Valour, Justification et Argumentation,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n°58, 1961.
- 42) Jane Sayer(trans.), Theory of State and Law, Progress Publisher, 1987., Chapter 16~17.
- 43) 언론법제의 비판적 연구방법론은 H.Hartog, D.Kennedy, D.Sholie 등의 소장사회학자 그룹의 CLS(Critical Legal Study)가 있다.

□ 고려대 불문학과, 서울대 신문대학원, 고려대대학원(신문방송학 박사)

□ 저술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 「언론윤리법제론」, 「물결치는 한국언론」, 「매스컴과 현대사회」 외

□ 현재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회장